

고

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01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(남양주왕숙 S-12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S-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공분양)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남양주왕숙 S-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공분양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개요

○ 대 지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, 진건읍, 퇴계원읍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S-12BL

○ 사 업 면 적 : 22,061.00㎡

○ 대 지 면 적 : 22,061.00㎡

○ 연 면 적 : 59,223.70㎡

○ 사 업 규 모 : 아파트 8개동(공공분양 391세대, 11~23층) 및 부대·복리시설

○ 구 조 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
4. 사 업 비 : 186,493,585천원 (주택도시기금 24,905,000천원)

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29.12.

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(031-8008-3227), 남양주시 주택과(031-590-4416)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(02-6908-9056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